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295호(號) 1934(昭和 9)년 9월 1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41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4(昭和 9)년 10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4(昭和 9)년 9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조선내발착(朝鮮內發著)의 부문[部] 목재(木材: 10급[級]의 것, 갱목[坑木]을 제[除]함), 상판(箱板: 절조[切組]가 유[有] 것을 포함[包含]함)의 항(項) 발역란(發驛欄) 중(中) 「단동[安東],」을 삭제(削除)하고, 착역란(著驛欄) 중(中) 「원산(元山)」의 아래(下)에 「, 성진(城津), 청진(淸津)」을 추가(追加)하며, 임률란(賃率欄) 중(中) 「5백톤(百噸)까지 1할(割) 5푼(分) 감(減)」을 「201톤(噸) 이상(以上) 1할(割) 5푼(分) 감(減)」으로 개정(改正)하고, 「301톤(噸) 이상(以上) 2할(割) 감(減)」의 앞[前]에 「3백톤(百噸)까지 1할(割) 5푼(分) 감(減)」을 추가(追加)함.